

안양시 고시 제2026-20호

고 시

1.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20-3번지 일원 “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공공 하수도(우수암거) 공사”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6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변경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안양시 하수과(031-8045-261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6. 1. 27.

안 양 시 장

가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
- 성 명: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
- 주 소: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58, 4층(비산동, 두진빌딩)

나. 사업 목적

-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공공하수관로(우수암거) 신설

다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

- 안양시 비산동 320-3번지 일원, A:125,963.2m²

라.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·명칭 및 용량

공 종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
우수암거 (소로2-1148호선)	3.2×2.0	m	333.2	
우수암거 (대로 3-9호선)	1.5×1.5	m	171.4	
점 검 구	0.9×0.9	개	7	

※점검구 위치는 시공 전 유지관리에 적합한 위치 협의하여 도면에 반영 후 시공

마.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

- 학의천배수구역, 관악처리구역

바.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

- 해당없음

사. 사업시행기간

┐ (당초) 2023.1.30. ~ 2025.12.31.

└ (변경) 2023.1.30. ~ 2027.12.31.

아.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(변경없음)

자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물의 조서,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
권리의 명세서 : “아”사항과 동일함